## ●환경부공고 제2021-676호

「유독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0월 08일

환경부장관

## 「유독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## 1. 개정이유

「유독물질 지정 고시(국립환경과학원)」 개정('21.9)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(1군·2군·면제)하기 위한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

- 2. 주요 개정내용
  - 가. 신규 유독물질(23종)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
  - 나. 旣 지정된 유독물질 중 화학물질식별번호(CAS번호)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
- 3. 의견제출
  -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8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(www.me.go.kr, 법령/정책→법령정보→입법·행정예고)를 통해 개정한을 확인한 후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(화학안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개정(안)	수정(안)	수정사유
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-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  - 일반우편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
  - 전자우편: leekh23@korea.kr
  - 팩스 : (044) 201 6830
  - 전자공청회 : 국민신문고(www.epeople.go.kr)
- 4. 그 밖의 사항

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(www.me.go.kr, 법령/정책→법령정보→입법·행정예고)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